

1. 의결주문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1. 8. 출범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위원장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,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20조)
- 나.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론이 필요 없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13조 제5항)
- 다.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13조제6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토론이 필요 없는 일상적·반복적
안건으로서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
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⑥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
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
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
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
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,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
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(이하 “위원장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
립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

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3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 의는 토론이 필요 없는 일상적 · 반복적 안건으로서 사전에 해 당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 로 의결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· 의결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⑥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 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 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 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0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장 협 의회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 력을 증진하고,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·도자치경 찰위원장 협의회(이하 “위원장 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</u>

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·운영
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
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
로 정한다.